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6,087,037	17,282,611
일반회계	495,220,893	14,856,627
특별회계	80,866,144	2,425,984
공기업특별회계	41,453,095	1,243,5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329,102	519,87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123,993	723,720
기타특별회계	39,413,049	1,182,3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3,740	55,912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732,992	171,990
주차장특별회계	1,825,319	54,760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21,461,998	643,860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8,529,000	255,8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